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	----

제출년월일 : '95. 12.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면허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중 종전 3~5급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하는 종전 조례를 1급내지 5급으로 확대 적용(안 제2조제2항) <개정>

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100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면제(안 제5조7호) <신설>
-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그 임대 수입금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안 제11조2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제19조제3항)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나. 합의사항 : 없 음

다. 예산조치 : 없 음

라. 조 례 안 : 별 칩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감면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4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 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제5조(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 ----- ----- -----</p> <p>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 ----- ----- ----- ----- -----</p> <p>1~6. (현행과 과음)</p> <p>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한다.</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p>

〈별표1〉

상이등급 분류표

현		행	개 정 (안)
급 수		분류번호	〈삭 제〉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 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 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2. 8.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1996년 2월 8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박충희)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면허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중 3~5급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하는 종전 조례를 1급내지 5급으로 확대 적용(안 제2조2항)

○ 종합토지세, 재산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1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면제(안 제5조7호) -〈신설〉
-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그 임대 수입금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안 제11조2항) -〈개정〉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의 지방세의 감면이나 불균일 과세의 대상인 공익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내무부 세제13400-376('95. 12. 6)호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 또한 조례개정 형식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